

번호 17-3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의료기관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Regulation on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윤형 <sup>1)</sup> , 이인숙 <sup>1)</sup> , 장옥 <sup>2)</sup> , 홍순규 <sup>3)</sup> 을지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sup>1)</sup> , 연세대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sup>2)</sup> , 연세대대학원 법학과 <sup>3)</sup>			
	영문	Yoon-Hyung Park, In-Sook Lee <sup>1)</sup> , Wook Jang <sup>2)</sup> , Soon-Kyu Hong <sup>3)</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Ul-ji University,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of Yonsei University <sup>1)</sup> ,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up>2)</sup> ,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up>3)</sup>			
분 야	보건관리 (O)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O)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O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건의료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가가 과도한 규제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률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형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사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계법규를 정비하고, 개혁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1996년부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있는 작업을 진행시켜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법규들에 대한 제, 개정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을 관리, 운영에 있어서 행정규제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첫째, 의료기관의 규제관련법률을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조세관련법규로 크게 나누고 종적인 측면에서 의료기관 관련법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상기 분류를 다시 세분화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는 인력관리법규, 원무관리법규, 의료관리법규, 시설관리법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조세관련법규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을 통해 그 납세의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서 현 조사체계에서의 위치와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횡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의료기관의 행정규제와 조세관련 규제제도를 살펴본다.

### 3.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규제관련 법률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규들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료법등의 인력관리기준등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개선됨이 없이 수십년째 그대로 고수되고 있어 적용상의 문제가 있고, 병원의 인력의 특수성,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상의 의무고용비율등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원무관리에 관한 법규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있다. 새로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 또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도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 기준을 잃었고 의료보호진료비가 제때에 지급되고 있지 않아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의료관리와 관계된 법규에 있어서 의료법 따른 의료기관 분류기준 등은 진료의 특성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의료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병원선택의 기준이 되는 충분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규에서는 특히 의료기관 폐기물 관리의 부서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및 적정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다섯째, 의료법인은 의료법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나타난 조세관련법규들은 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영리법인과 거의 똑같은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하다.

### 4. 고찰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지는 특성, 즉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그 개혁의 정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의 노력을 유도하고 과거의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신뢰를 기초로 병원정책을 입안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병원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